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6. 13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6.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98.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조기교육에 의한 교육연령이 낮아지고, 또한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우수인력을 대학교 졸업 후 오디션에 의거 시립예술단원으로 연계 흡수, 예술의 도시 부천의 기반을 조성코자 자격연령을 조정

나. 주요골자

-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자격연령 조정
 - 14세 이상 20세 미만 → 12세 이상 24세 이하로 변경(안 제6조제2항, 제8조)
- ※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으로 활동하다가 대학교 졸업 후 오디션에 의거 시립예술단원으로 입단 가능
- 정부 조직개편에 의거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변경(안 제16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없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7호
의결년월일	98. 6. 13 (제61회)

제출년월일 : 1998. 6.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청소년의 조기교육에 의한 교육연령이 낮아지고, 또한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우수인력을 대학교 졸업 후 오디션에 의거 시립예술단원으로 연계 흡수, 예술의 도시 부천의 기반을 조성코자 자격연령을 조정

□ 주요골자

-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자격연령 조정
 - 14세 이상 20세 미만 → 12세 이상 24세 이하로 변경(안 제6조제2항, 제8조)
- ※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으로 활동하다가 대학교 졸업 후 오디션에 의거 시립예술단원으로 입단 가능
- 정부 조직개편에 의거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변경(안 제16조제2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4세 이상 20세 미만”을 “12세 이상 24세 이하”로 한다.

제8조중 “만20세 미만으로”를 “만24세 이하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체육부관람료 징수기준”을 “문화관광부관람료 징수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생략)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현행과 같음)
②각 예술단체에서는 단원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4년제 정규대학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청소년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u>14세 이상 20세 미만</u> 의 중학교 재학 이상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 ----- ----- ----- ----- <u>12세 이상 24세 이하</u> ----- ----- ----- -----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8조(위촉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한다. 단,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의 위촉연령은 <u>만 20세 미만으로</u> 하며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촉연령의 제한) ----- ----- ----- <u>만 24세 이하로</u> ----- ----- -----
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u>문화체육부 관람료징수기준에</u> 의한다.	②----- <u>문화관광부</u> <u>관람료징수기준에</u> -----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